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01월 09일
- 회부일자 : 2019년 01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일부 용어·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에 포함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에 표기 (안 제1, 2조)
- 나.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(안 제4조)
- 다.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휘·감독 및 감사 실시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의2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, 일부 용어,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법제처의 「법령 입안·심사 기준」에 따라 목적 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어 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, 안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“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”를 삭제하고,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김.
- 안 제4조에서는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음.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,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지만,
 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센터로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바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위탁 계약기간 5년 의무 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.
 - 그러나,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목적, 조직형태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, 타 복지시설들과 달리 위탁기간을 꼭 3년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발견할 수 없고, 오히려 상위법령에 따른 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 및 수탁기관 양자에게 긍정적이며,
 -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위임사무로 위탁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, 위탁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필요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7조의2는,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업무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5조를 준용하여 센터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도지사의 지휘·감독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으며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며, 입법예고와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